

2027년도 제76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1 교 시

- 일반·세무회계·사이버(공통) -

목 차

【형 사 법】(공통)		1
【헌 법】(공통)		12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찰대학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농수산물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甲이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동종행위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이때 甲을 가중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14조(벌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다. 甲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는 특정 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 위 법조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라. 甲이 A 소유의 사과나무 밑에서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배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전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A 소유의 사과나무에 옮겨 붙어 사과나무를 소훼한 경우, 이때 사과나무를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 乙 등이 공모하여 차량가액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는 자동차를 상용했음에도 차량 사용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고지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어 해당 자동차 사용이 甲, 乙 등의 수급자격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 경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甲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하여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부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 ③ 법무사인 甲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후 개정된 「법무사법」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경우, 이러한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④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인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 ② 경찰관인 甲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채무자의 주소 및 수배여부를 확인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청’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 ③ 甲의 종업원 乙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甲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던 경우, 甲은 그러한 사유만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 정한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
- ②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변경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인 甲이 압수되어 보관중이던 오락기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해당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험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고,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면,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5.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례 1> 甲은 평상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네 사람 A를 살해할 의도로 건물 옥상에서 A의 머리를 향해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빗나가 A 옆에 서 있었던 A의 남편 B가 맞아 죽은 경우
- <사례 2> 甲은 자신의 험담을 일삼던 회사 동료 A를 살해할 의도로 야간에 A의 집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귀가 중이던 A의 친형 B를 A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한 경우
- <사례 3> 甲이 옆집 축사(畜舍)의 악취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옆집의 소를 죽일 의도로 축사에 있던 소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는데, 총알이 빗나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던 소의 주인인 A가 맞아 죽은 경우
- <사례 4> 甲이 옆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의 승용차를 파손할 의도로 화살을 쏘았으나, 화살이 빗나가 마당에 누워 있던 옆집 개가 맞아 죽은 경우

- 가.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 나. <사례 2>와 <사례 4>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이 동일하다.

- 다. <사례 1>에 대한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과 <사례 3>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의 입장을 비교할 때, ‘발생사실 부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는 동일하다.
- 라. <사례 1>과 <사례 4>의 경우, 추상적 부합설에 의할 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달리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도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
- ③ 인턴 甲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을 할 때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에 따라 간호사 乙이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甲은 환자 A에 대한 수혈 담당 의사였음에도 乙이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환자 B에게 수혈할 혈액을 A에게 잘못 수혈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은 A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7.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그의 처 甲이 응소하는 행위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이후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甲이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 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甲, 乙 등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 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술에 만취한 A(남, 57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정주부인 甲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가자, 甲이 유리창 값을 받으려 A를 뒤따라 가며 그 어깨를 붙잡았으나, 욕설을 계속하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잡고 있던 손으로 A의 어깨부분을 밀치자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A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쳐 1차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인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②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따르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로 본다.
- ③ 원인설정행위 자체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시기가 앞당겨지므로 미수범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 ④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견해에 대해서는 실행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 오던 甲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오인하고 처리시설 설치 후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나. 건축업면허없이 시공할 수 없는 건축공사를 甲이 타인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시공하였으나, 위 면허의 대여가 감독관청의 주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다. 甲이 법무부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자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내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라. 숙박업자인 甲이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준수사항) 제2호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과 함께 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乙은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는 동안 甲은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사무실 주인 A에게 乙의 침입사실을 알려 A와 함께 乙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 甲에게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甲은 중위 乙과 군용물 횡령 범행을 공모하면서 乙은 엔진오일을 매각 처분하고 甲은 송증정리를 하기로 한 경우, 甲은 후에 범의를 철회하고 송증정리를 거절하였으나 공범자인 乙의 범죄 실행을 중지케 하지 못했다면 甲에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甲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 乙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甲 명의를 乙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乙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 ④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50억 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甲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11.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가.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甲이 11세의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고 이에 乙이 절도를 한 경우, 甲에게는 절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나. 공범독립성설은 공범과 간접정범의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범종속성설은 구별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 甲이 A에게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공범종속성설은 甲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52조 제2항을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본다.
- 라.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분은 공범독립성설의 입장과 일치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에게 낙태수술비를 별도로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그 후 甲은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은 성매매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乙와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 나. 甲은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 다. 회사 대표인 甲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 라. 다른 사람이 한달 정도 히로뽕 제조행위를 계속하던 도중에 甲이 뒤늦게 제조행위를 알고 그에 가담한 경우, 이와 같이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甲은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입건된 후, 다시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요구하였고 그 채혈감정결과 0.13%(주취운전죄 해당 수치)로 판명된 경우, 이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 주취운전죄의 실체적 경합관계를 인정한다면 음주측정거부 후에 음주수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단형이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더 높아지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죄만 성립한다.
- 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죄는 이후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 ③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 ④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14. 형의 가중·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나.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정형의 장기나 단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해도 된다.

라.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징역형만을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 때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더라도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 ② 甲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A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A의 손을 뿌리치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A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A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6.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 ④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요구된다.

17.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 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다.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할 수 있다.
- 라.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① 가(O), 나(O), 다(O), 라(O)
- ② 가(O), 나(X), 다(O), 라(X)
- ③ 가(X), 나(O), 다(O), 라(O)
- ④ 가(X), 나(X), 다(X), 라(X)

18. 강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나. 甲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 A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한 경우, 甲의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다.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으며,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 라.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9.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나. 甲이 강간을 목적으로 A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이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라.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 ① 가
② 가, 나
③ 나, 라
④ 나, 다, 라

20.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甲이 미성년자 A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A의 아버지 B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그 약취행위에 A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나. 甲이 미성년자인 A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A의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A와 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른 경우에도 甲에게 미성년자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라.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 ① 가(O), 나(X), 다(X), 라(O)
② 가(O), 나(X), 다(O), 라(X)
③ 가(X), 나(O), 다(X), 라(O)
④ 가(X), 나(X), 다(X), 라(X)

21. 명예와 신용·업무 및 입찰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증명의 정도로는 ‘개연성’이 요구된다.
- 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 ③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이 요구된다.
- ④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22.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된다.
- ②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의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 ③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공동거주자가 설치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3. 재산범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가.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나.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는 영득죄이다.
다.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다.
라.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채권자로부터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甲이 A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은 경우, 甲의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은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③ 채권자 甲이, 비록 채무자 A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어 A에 대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25.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
- ③ 甲이 A를 공갈하여 A로 하여금 甲이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甲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 ④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더라도,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6.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과 乙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甲과 乙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②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甲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③ 甲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 ④ 甲이 불을 놓은 후, 그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A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제적 경합에 해당한다.

27. 문서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융위원회법」 제29조(집행간부 등),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 ②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甲이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전송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甲에게 위조 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③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다면, 설령 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라도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8. 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문 중이던 사법경찰관 P는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甲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이 P의 목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항의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사법경찰관 P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甲을 구인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甲

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甲이 이를 거부하면서 P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경우, 甲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29.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정보처리장치인 동시에 정보저장매체이기도 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 나. 수사기관이 甲의 동의를 얻어 甲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등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甲의 변호인에게 위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甲이 실제 탐색·복제 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위 압수절차는 적법하고, 위 압수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므로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라.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대상에 포함된다.
- 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가(O), 나(X), 다(O), 라(X), 마(O)
 ② 가(X), 나(X), 다(X), 라(O), 마(O)
 ③ 가(X), 나(O), 다(X), 라(O), 마(X)
 ④ 가(X), 나(O), 다(O), 라(X), 마(X)

30.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수색영장

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자의 참여가 없더라도 그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 ②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 USB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자신의 USB로 복제한 다음 그 복제된 USB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을 뿐, 피의자 소유 원본 USB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USB 소유·관리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본범 甲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은닉할 것을 부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교부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乙이 위 정보저장매체를 증거은닉 범죄의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다면, 이는 甲이 '수사종료'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위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乙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는 위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당초 수하인인 甲으로부터 메모리카드를 임의제출받으려고 하였으나, 甲이 "자신은 메모리카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자,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세관 유치창고 담당자를 피압수자로 하여 압수집행을 하면서 甲에 대해서 절차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위 압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1. 수사의 적법 및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되었다면 이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② 경찰관들이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불특정 다수가 출입가능한 식당에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테이블에 앉아있는 甲을 찾아가 음주운전을 해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측정은 적법하다.
- ③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심문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보호관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행정절차에 해당하나, 만약 그 결과에 따라 선고유

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 ④ 甲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행위로서 허용되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나,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2.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라.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마.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바. 체포·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사.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도 진술의 임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설령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룰 수 있다.

3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나.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에 대해서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친고죄에서 대리에 의한 고소취소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친고죄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마.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 효력이 있다.

- ① 가(O), 나(X), 다(O), 라(X), 마(X)
 ② 가(X), 나(O), 다(O), 라(X), 마(O)
 ③ 가(O), 나(X), 다(X), 라(O), 마(X)
 ④ 가(X), 나(X), 다(O), 라(X), 마(X)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甲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甲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피해자 등 제3자가 甲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甲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시간 중에 한 아동학대발언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④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법원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36.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론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로는 보강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④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甲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甲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3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

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형사조정조서 중 ‘피의자의 주장’란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성폭력범죄의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은 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을 영상녹화하여, 검사가 이 영상녹화가 담긴 CD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정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38. 증거동의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甲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지적능력·판단능력 등과 같이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甲의 상태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甲의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③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연속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간주되며,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를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시의 시장 甲은 자신의 후원회 회장인 乙과 최근 P시가 입찰 예정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이용하여 건설업자 丙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다음 날 甲과 乙은 丙을 만나 P시의 위 사업을 언급하면서 업무용차량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乙에게 지원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丙은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甲의 요구대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와 현금 2,000만 원을 乙에게 건네주었다. 丙은 乙에게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는 않았으며 乙도 丙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위의 범죄사실로 甲, 乙, 丙은 기소되었는데, 피의자신문에서와 마찬가지로 甲은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시 범행일체를 부인하였고, 丙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 가. 현금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은 뇌물수수죄가, 乙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에 대하여 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않아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승용차는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丙은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 라. 甲과 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마. 甲과 丙은 함께 재판받게 된다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제3자성이 유지되어 甲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丙은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 바. 甲은 乙과 공범관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乙과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甲은 위증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1)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치과기공사 甲은 치과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병원에서 수년간 치과환자들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해왔다. 해당 혐의를 인지한 사법경찰관 P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乙의 참여하에 이 병원을 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A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케 하였다. P는 A에게 휴대전화를 주고 甲과 乙이 사용하던 책상서랍과 그 내용물 촬영, 병원 환자대기실 바닥에 펼쳐진 압수 대상물 분류, 병원에 설치된 간호사 PC 탐색, 환자 엑스레이 사진이 부착된 진료기록부 확인 등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 (2) 다음 날 甲은 乙에게 이러한 무면허진료행위에 대해 고가의 위험수당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심한 욕설을 하여 앙심을 품고 격투기선수 출신인 丙에게 乙을 혼내주라고 하면서 乙의 거주지 주소를 알려주었다. 23:00경 丙은 乙의 아파트 베란다문을 통해 들어가서 상해의 고의로 乙에게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러 乙이 쓰러지자 乙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丙은 乙이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乙을 어깨에 들쳐 업고 나오다가 우연히 현관에서 명품시계를 발견하여 이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실제로 丙은 절도습벽이 있어서 이미 앞서 약 2개월 동안 총 7회의 절도 사실이 있던 중이었다. 이후 丙은 乙을 자동차에 싣고 가 바닷가 절벽에서 던져 乙은 익사하였다.

- 가. (1)에서 甲에게 성립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있어서 소극적 신분을 가진 乙은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위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나. (2)에서 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다. (2)에서 丙에게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 라. (1)에서 A의 참여행위는 압수·수색에 필요한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행위로서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적법하다.
- 마. (2)에서 검사가 丙을 상습절도죄로 기소하였는데, 총 8회의 절도 중 3회의 절도사실에 대해서는 丙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전체 8회의 절도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 시

헌 법

1.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헌헌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 제안을 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 ② 1962년 제5차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을 헌법개정안의 제안자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 ③ 1972년 제7차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 ④ 1980년 제8차 개정된 헌법과 1987년 제9차 개정된 헌법은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만 다를 뿐 다른 개정절차는 동일하다.

2.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은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위원회에서,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서 관장하게 하였다.
- ② 1954년 제2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였다.
- ③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은 1971년 헌법위원회가 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규정되었던 군인·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자 위헌논란을 없애기 위해 1972년 제7차 개정에서 헌법조항으로 신설하였다.
- ④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최저임금제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신설하였다.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②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 ③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시행령」 조항은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킨 구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국제평화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우리 헌법은 전문이나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 '국제평화', '침략전쟁의 부인'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조약에 부여되는 명칭이나 주로 쓰이는 조문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③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 ④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자에게 국내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었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할 입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우리 헌법질서가 예정하는 인간상은 사회와 고립된 주관적 개인이나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분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관련되고 공동체에 구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자신의 고유가치를 훼손당하지 아니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구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초기배아는 수정이 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 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태아는 형성 중인 인간으로서 생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6.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②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③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만 보고의무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한정하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형 혈우병 환자와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면서 환자의 출생시기를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계급인 중사의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③ 「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이 현역병과 달리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8.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금지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관심대상수용자로 관리되어 엄중한 계호가 요구되는 수형자에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민사법정에서 교도관이 양손수갑 2개와 포승을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등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유치를 강제하는 「형법」 조항은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벌금형의 집행율을 제고하고 형

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공익이 노역장유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9.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화' 원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 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 ②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유선방송관리법」 조항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전달 또는 전파와 관련지어 생각되므로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집필은 문자를 통한 모든 의사표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0.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 ②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은 '종교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종교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사항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 ③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되고, 우대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은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11. 근로의 권리,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제에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청원경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③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④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12. 환경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는 구 「도로법」 조항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 ③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야 할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되며, 이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 ④ 교도소장이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채광·통풍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거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3. 교육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수학적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수학적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31조 제2항·제3항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9조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할 것을 보장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야간수업 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14.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예외 사유인 필기시험의 실시·위탁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운영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운영 기준에 '악취'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용기준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④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은, 부담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어떤 요건 하에 추가로 징수하는지에 관하여 그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조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예측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15.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단일협회로서 대한건축사협회를 두도록 하고 이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에게도 소급적으로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건축사법」 조항 중 부칙 제3조 제1항은,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정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 조항이 ‘정부의 대책 발표일’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 후에는 종과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③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규정한 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제1호 가목 중 ‘한의과대학’에 관한 부분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6.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비례대표제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하거나 직선 의석수 등을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저지조항(沮止條項)이라 하는바,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비율이 낮아 전체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비록 비례대표제도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다.
- ② 「정당법」에 따르면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③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1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해당 조항이 그 밖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②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일, 시간)급 및 기본급 외의 구체적인 급여 항목(성과급, 상여금, 수당 등)이 있는 경우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액, 비율, 산식 등을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소지’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④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을 차별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18.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치료감호 가중료 시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되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중료 결정에 따라 개시되는바, 비록 보호관찰의 개시에 있어 법관의 관여가 헌법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독립성·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안처분의 개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②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의 동의와 동의요청서 제출 등이 있으면 청구국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추가적 범죄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하여 청구국과 피청구국 사이에 특정성 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동의요청절차 진행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범죄인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신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 ④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법관의 재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9.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구속기간의 압박 없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충실한 심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구속재판제도와 기피제도 모두가 실효성 있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감염병의 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은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0.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조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관련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

항 [별표 5] 중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1.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가장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구 「소득세법」 조항 중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일단 공공필요성 등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애당초 해당 토지의 강제적 취득에 대한 헌법상 정당성과 공익사업 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근거는 과거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등에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 조항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2.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변리사로 하여금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은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허용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 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사회복지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3.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
-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 아니할 수 없다.
- ③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군인사법」 조항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4.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 중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재산권 제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항고권 행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가하는 것이므로, 항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위 조항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재판청구권이다.
- ② 면책허가결정을 공고한 경우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즉시항고기간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제564조 제3항의 공고가 있는 날'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가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조항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가사소송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④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에 기속되도록 정한 「행정심판법」 조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도록 제척기간을 두어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차단하여 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②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 중 '급여' 가운데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무상 장애연금의 급여액을 예외 없이 수급권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퇴직한 날로부터 이후 장애확정일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액 산정의 기초를 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퇴직일로부터 장애확정일까지의 불가변동으로 인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④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26. 학문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학생도 연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대학생으로서 수학(受學)하는 것은 학문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
- ②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③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교원의 임용이나 학술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고,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우므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의 전달을 주된 업무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직무전념의무를 요구받는 초·중등학교 교원과

차이가 있다.

27.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적법」상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적법」상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 ③ 국적은 국가와 그의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이지만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④ 「국적법」상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와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8. 기본권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 ②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 ④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9.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대체복무제도를 정함에 있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조화롭게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 선택을 어렵게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을 포함한다.
- ③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는 국가가 개입하되, 다만 이를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 ④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0. 국민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선거권과 선거원칙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해서만 국가와 국가권력의 구성과 창설이 비로소 가능해지고 국가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 ②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또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민주권원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 ④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31.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 ②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③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일부이기는 하나,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나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이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2.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한은 「국가배상법」이 상호 보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상호 보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국가배상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 ③ 「국가배상법」상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3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전시납북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책임의 정도와 태양, 예산,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서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④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34.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

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③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35. 평등권,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 ②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 ③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 ④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36.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구 「담배사업법」조항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②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그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그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증급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④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른 판단은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법익의 종류 및 그 법익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협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의 의미 등을 비교衡量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7.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적정히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의무이행은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② 「청원법」상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청원법」상 국민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없다.
- ④ 「청원법」상 국민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3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하지만, 공적인 영역의 활동에 있어서도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 ②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것으로서 비록 개방적 규범구조를 지닌 헌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념이 구체화될 수 없다.
- ③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일 뿐,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나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④ 교정시설 안에 위치한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 경비, 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9.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조항은 저작자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기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고 이에 따라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선거운동방법의 규율은,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 선거의 공정성, 우리의 선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 ③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운동을 시기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헌법 제21조 제4항 전문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일 뿐,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적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40.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통신관계의 발생으로 야기된 모든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계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장소·통신횟수·통신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하는 것이다.
-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성·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구치소장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게 온 서신 속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녹취서가 동봉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서신수수를 금지하고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인 발신자에게 위 물품을 반송한 것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